

議案檢討報告書

1. 發議 또는 提出者 : 林 憲 鍾 議員 外 5人
2. 件 名 : 大田直轄市議會 會議規則中 改正 規則案
3. 案 件 要 旨 : 別 添 參 照
4. 檢 討 意 見 : 別 添 參 照

위 議案에 對한 檢討事項을 別添과 같이 報告합니다.

1992年 8月 日

運 營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鎮



大田直轄市議會 會議規則中 改正 規則案

檢 討 報 告 書

1992 . 8 .

運 營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大田直轄市議會 會議 規則中 改正 規則案

檢 討 報 告

이 規則案은 1992. 8. 22. 林 憲鍾 議員 外 5人으로부터 提出 되어 1992. 8. 24. 當委員會에 回附되었음.

1. 提 案 理 由

現行 規定에 議案의 提出期限이 明示되어 있지 않아, 議案이 遲延됨으로 充分히 審査할 수 있는 時間이 없었고, 議員의 請暇

및 缺席계를 議長에게 提出토록 되었으나 逮捕·拘禁時에는 關係機關에서 通報된 令狀寫本을 請暇書로 代替토록 하기 위하여 改正하려는것임.

2. 主 要 骨 子

가. 議會議員은 當選初에 當選證書를 議會事務處에 提示하고 登錄하는 것은 當選通知書로 代替하는 것임. (案 2條)

나. 議員의 請暇 및 缺席계를 議長에게 提出토록 되었으나, 逮捕·拘禁時에는 政府에서 通報된 令狀寫本을 請暇書로 代替토록 改正 (案 第 7條)

다. 議案의 提出, 發議期間을 集會日 7日前에 提出토록 明示(案 第 20條)

라. 議會에서 實施하는 選舉方法 明示 (案 第46條 第4項)

3. 檢 討 意 見

本 案件은 上位法 改正에 따른 一部 內容을 調整하고 現行 制度上의 不合理한 運營 體制를 合理的으로 補完 改正코자 하는 것임.

主要 內容을 말씀드리면,

첫째, 案 第 2條에 의한 當選初 議員이 提出하는 當選證書를 地方 議會議員 選舉法 施行規則 第 68條의 規定에 의하여 當選通知

書로 그 名稱을 變更하는 것으로써, 關聯 法規에 따른 妥當한 措置라 思料됨.

둘째, 案 第 7條의 請暇 및 缺席에 있어서 第 1項에 但書 條項을 새로이 新設하여 逮捕 또는 拘禁時에는 政府에서 通報된 令狀寫本을 請暇書로 보도록 하였음.

이는 地方自治法 (第34條의 2) 改正에 따른 것으로써 本 條例에 明示되어야 할 것으로 思料됨.

또한 第 2項의 請暇 許可에 있어서, 5日以內는 議長이 5日을 超過하는 것은 議會에서 이를 許可토록 되었으나, 開會中에 提

出된 請暇는 議長이 許可토록 하였음. 이는 閉會中에 議員이 海外出國等 長期 出他할 경우 現實적으로 本會議 許可 以前에 行爲가 이루어지고 있는 實情으로써 이를 現實에 맞게 調整하기 위한것임.

셋째, 案 第 20條 議案의 提出 및 發議에 있어서 市長과 教育監은 議案을 議會에 提出할 경우 豫算이 隨伴되는 條例案 및 其他案件에 대하여는 必要한 豫算 明細書를 함께 提出토록하여 議案

提出에 보다 慎重을 기하고 非合理的인 問題點이 없도록 새로운 條項을 新設하는 것임.

또한 市長과 教育監의 案件 提出에 있어서 緊急한 案件外에는 7日前에 提出토록 하여 議案 審査에 대한 充分한 時間的 餘裕를 갖도록 하였음.

이는 그 동안 議案 審査 過程에서 나타난 檢討上의 未備點을 補完 改善하려는 事項으로 關聯 根據 法規는 없으나, 自體 任意 規定을 들 수 있는 事項인 바, 議會 運營上 바람직한 措置라 思料됨.

다만, 緊急한 案件의 範圍를 分明히 하여 協議 過程에서의 執行 部와 異見이 없도록 充分한 檢討가 있어야 할것임.

넷째, 案 第 46條의 票決方法에 있어서 事案에 따라 記名 또는 無記名投票로 實施할수 있는 것을 同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無

記名投票인 議會의 各種 選舉以外에 地方自治團體長의 再議要求와 人事에 관한 事項을 追加로 明示하여 重要事案에 대하여는 無記名으로 實施토록 그 範圍를 分明히 하였는 바, 이는 國會

法 第112條의 規定에 의한 法律案 및 人事에 관한 無記名 投票方式과 意味를 같이 하는 內容으로써 必要한 措置라 思料됨.